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위탁병원) ESG 행동 가이드라인

2026. 0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위탁병원) ESG 행동 가이드라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공공의료 복지기관으로서 보훈가족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의 위탁병원이 공단과 함께 보훈진료를 수행하며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품질,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적정진료 및 진료비 청구, 종사자 인권 및 안전보건, 환경 및 자원관리, 윤리・준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위탁병원 ESG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위탁병원은 관계 법령과 위탁진료 계약에 명시된 공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본 행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진료 및 기관 운영 과정에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종별・규모 및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기준의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환자관리]

-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대기・진료・수납 등 의료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응대 서비스 기준을 운영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환자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성별・인종・연령・장애・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위탁병원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진료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위탁진료 이용절차, 진료범위 및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 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고령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가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환자에 대한 폭언・폭행・방임・학대 등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 사항이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품질]

- 위탁병원은 진료 및 환자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의료사고, 감염, 낙상 등 예방 가능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관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을 확인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필요한 면허 및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의료기구・시설・진료공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소독・멸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진료의 적정성과 의료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인공신장실, 내시경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또는 시술을 운영하는 위탁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감염 예방 및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입원실을 운영하는 위탁병원의 경우, 낙상・욕창 등 입원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 위탁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법령 또는 정당한 근거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진료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위탁병원은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개인정보 또는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종사자가 관련 기준과 보호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적정진료 및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 위탁병원은 관계 법령, 위탁진료 계약 및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정확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거나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록·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위탁병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진료를 제공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검사·처치·투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의 본인부담 면제·감면 범위 등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해당 내용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 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공단의 진료비 심사·확인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한 오류 또는 부적정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종사자 인권 및 안전보건]

- 위탁병원은 노동 및 인권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인, 보건의료종사자 등 모든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폭행 등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채용, 배치, 승진, 보상 등 고용과 근로과정에서 성별・연령・장애・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종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위탁병원은 근로시간, 임금, 휴게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종사자에게 적정한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및 감염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 여건에 맞는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 및 자원관리]

- 위탁병원은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환경 관련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적정하게 취득・유지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의료폐기물을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리・보관・처리하고 관련 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의약품, 화학물질 등 환경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파악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사용・처리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용수 및 각종 소모품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의료기기・전자제품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 공단이 추진하는 친환경・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윤리・준법 및 공정한 협력]

- 위탁병원은 기관 운영 및 위탁진료 업무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단과의 계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위탁병원 지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 또는 관계자에게 금품・향응・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위탁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과 진료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 위탁병원은 소속 종사자가 반부패와 준법 관련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부패 또는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계 법령, 위탁진료 계약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 제출, 확인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공단이 위탁진료 관리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료 제출, 확인 및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위탁병원은 의료·업무 분야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윤리 원칙을 준수하여 책임 있게 활용하여야 합니다.

당 의료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협력사(위탁병원) ESG 행동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계 법령 및 위탁진료 계약을 준수하고 본 가이드라인의 행동기준을 의료서비스 제공 및 기관 운영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